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20-0
, 203호 (복정동)

임찬용



2096923-921459

제7형사부

13112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7 형 사 부

정 본 입 니 다

2023. 3. 6.

수원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류강유



결 정

사 건 2022초재752 재정신청

신 청 인 임찬용

피 의 자 1. 유정민

2. 성명불상

불 기 소 처 분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 2022. 10. 13.자 2022형제21035호 결정

주 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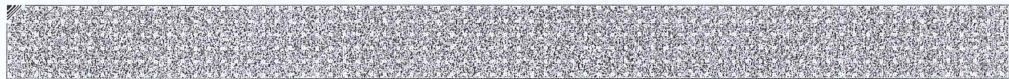
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,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.

살피건대,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

2023. 3. 3.

재판장 판사 이제정

판사 이봉락

판사 김대권

*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, 그 기간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.
*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